



캐나다 개인연금(RRSP) 세제혜택의 특징과 시사점

오병국 연구원

요약

■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캐나다는 노년기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, 이 중 가장 윗층에 속하는 개인연금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. 이와 같은 상황은 개인연금가입을 적극 유인하는 소득공제, 투자수익 과세이연, 생활연계 프로그램 등 정부의 과감하고 다양한 세제지원 프로그램 때문임. 우리나라는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해 캐나다의 경우를 참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.

■ 캐나다는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고령사회에 속한 국가이며, 노년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.

- OECD(2010)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970년 7.9%에서 2010년 14.1%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들.
 -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데 약 40년이 소요됨으로써 미국(72년), 프랑스(115년)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었음.
- 고령화 혹은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4개(0~3층)의 층에 걸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음.(〈그림 1〉 참조.)
 -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0층의 보충소득수당(Guaranteed Income Supplement: GIS), 1층의 노령소득보장(Old Age Security: OAS), 2층의 국민연금제도(Canadian Pension Plan: CPP/Quebec Pension Plan: QPP), 3층의 기업연금(Registered Pension Plans: RPP), 개인연금(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: RRSP)으로 구성됨.

〈그림 1〉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체계

3층	기업연금(RPP), 개인연금(RRSP)
2층	국민연금제도(CPP, QPP)
1층	노령소득보장(OAS)
0층	보충소득수당(GIS)

■ OECD 국가 중에서도 캐나다는 사적연금¹⁾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, 특히 개인연금²⁾을 통한 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가 매우 활발함.

- OECD(2009)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공·사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은 약 70%이며, 이 중 사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은 약 31.1%로서 사적연금우위형³⁾ 국가에 해당됨.
- 또한,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약 50%(OECD 2007년 기준)로서 개인 스스로의 노후준비 활동이 비교적 역동적임.
 - 참고로 캐나다의 인접국이면서 사적연금우위형 국가인 미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캐나다보다 훨씬 낮은 17%에 불과하며,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18%로서 캐나다에 비해 낮은 수준임.

■ 이러한 개인연금의 활성화는 소득공제, 투자수익 과세이연, 세제지원 연계프로그램 등 정부의 다양하고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연금가입이 적극 유도되기 때문임.

- 개인연금계좌에 납입되는 소득은 당해 연도의 개인소득신고 시에 소득공제(income deduction)⁴⁾됨.
 - 예를 들어 당해 연도의 소득이 50,000 달러이고 개인연금의 불입금이 5,000달러인 경우 과세대상소득(taxable income)이 45,000달러로 줄어들게 됨.
- 개인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계좌인출 시까지 과세대상이 아님.
 - 개인연금저축계좌에서 저축을 인출한 경우 인출세(Withholding Tax)를 부과함.
- 개인연금저축계좌를 개인연금저축펀드(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: RRIF)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여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.

1)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3층(기업연금, 개인연금)에 해당됨.

2) 개인이 은퇴 후(65세) 연금수령을 위해 정부에 등록하는 연금저축이며, 소득이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는 연금계좌에 71세까지 저축하는 것이 가능함.

3)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20~40%를 보장하는 국가이며,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, 영국, 네덜란드, 아일랜드 등이 있음.

4) 개인연금불입금은 최대 22,000달러(2010년 기준)까지 소득공제됨.

- 만 71세가 되면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전액을 인출해야 하며, 이 때 개인연금저축펀드로 비과세 전환이 가능함.
- 개인연금저축펀드에 적립된 자산은 부분인출이 가능하므로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전액인출 때보다 세금부담을 덜 수 있음.
-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있는 자산은 본인(혹은 배우자)의 첫 주택구입시 대출의 형식을 빌려 세금을 내지 않고 최대 20,000달러까지 찾을 수 있음.
- 이 때 인출된 자산은 2년 거치기간을 거쳐 최대 15년 이내에 다시 개인연금저축계좌로 회수해야함.

■ 한편, 공적연금 우위형 국가⁵⁾인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 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.

-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.9%(2010년 기준, OECD)로서 공적연금 우위형 국가에 해당 하나,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.
- 이에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지급액 축소, 연금수령기간 연장 등을 실시함.

■ 따라서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캐나다와 같은 적극적인 세제혜택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.

- 199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최대 400만 원⁶⁾까지 불입액의 소득공제(세제적격), 10년의 계약유지 시 연금수급액 전액 비과세(세제비적격) 등의 기본적인 세제혜택이 있으나,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지원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임,
 - 세제적격상품의 경우 생활비 활용 등으로 계약해지 시 수령하게 되는 일시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부과됨.
 - 세제비적격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나, 10년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이 적용됨.
- 이에 캐나다의 경우를 참조하여 주택마련비, 교육비 등의 필요로 인한 개인연금자산 인출 시에 세제적격여부, 필수가입기간 등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을 부여한다면 이전보다 개인연금 가입의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.
 - 다만, 은퇴 후 노후자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인출한도설정, 인출횟수제한, 인출금액회수기간설정 등이 필요할 것임. **kiri**

5)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40~60%를 제공하는 국가임.

6)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불입액과 합산한 금액임.